

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

수신자

정 보 내 용			
접 수 일 및 접 수 번 호		당초결정기간	
연 장 사 유			
연장결정기간			
그 밖 의 안 내 사 항			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
협조자

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

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)

우 /주소

/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 /팩스번호() /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/공개구분

주) 소속기관의 경우 "○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"을 "소속기관의 장"으로 고쳐 사용한다.